



제336회 정례회

2014.12.10.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14년 12월 01일

○ 회부일자: 2014년 12월 02일

3. 제안이유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및 변경

(단위 : m², 천원)

기관명	구분	사 업 명	수 량	금 액
청주교육지원청	건물	수성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992.0	2,914,000
합 계		(1 건)	992.0	2,914,000

□ 수성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① 사업위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리 263-1외 2필지

② 주요내용

- 사업목적: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문화공간으로 활용
 - 사업용도: 다목적교실
 - 사업기간: 2015. 1. ~ 2016. 8.
 - 소요예산(총사업비): 2,914,000천원
 - 연도별소요액: 2014년도 2,914,000천원
 - 재원조달: 지방비 2,040,000천원, 기타 874,000천원
 - 재원별 사업비: 건축비 2,828,000천원,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용역 86,000천원
 - 사업규모
 - 건물 1동 1층 992m²
 - 주요(부대)시설
 - 다목적교실 1동
 - 부지성토 21,600m², 옹벽 1,000m², 담장 200m, 배수로 200m
 - 기준가격: 건축비 2,828,000천원
 - 계약방법: 공개경쟁입찰
- ③ 취득사유: 체육교과 등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교내행사 공간 확보를 위한 다목적교실 증축

5.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안은 수성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을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2,914백만원이며, 그중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 규모가 874백만원으로 30% 수준임.
- 2014. 11. 6.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이 확정되어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었으며, 지역주민 숙원 사업으로 전천후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행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공동 활용 예정인 바, 타당하다고 판단 됨.

관 계 법 령 발 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

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전문개정 2009.4.24]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